

통상 이슈 브리프

2017년 6호

세이프가드(Safe guard) 제도

통상본부 통상정책실 정지연 차장 ako98@kbiz.or.kr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월 22일 한국산 태양광 전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한데 이어 10월 5일에는 한국산 세탁기도 미국 세탁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여 관련 업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현실화 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상이슈브리프 이번호에서는 지난 호 다루었던 반덤핑, 상계관세조치에 이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3대 무역구제제도이자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이프가드 (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Safeguard)는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제도와는 달리 공정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발동요건이 보다 까다롭고, 한시적으로 발동하여야 합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으로 실행됩니다.

□ 세이프가드 (Safeguard) 발동 요건

- **(수입의 증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입의 절대적 · 상대적 증가 모두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품과 동종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그럴만한 가능성의 존재(Threat of serious injury)**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입품과 동종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그럴만한 우려의 존재(Threat of serious injury)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해당 상품의 절대적 · 상대적 수입증가량,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을 점검하고 국내 동종 상품의 판매, 국내산업의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과 손실, 고용수준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럴만한 가능성의 존재와의 인과관계)**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가능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피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이프가드 (Safeguard) 조사개시 및 시행 국가

- WTO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1995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총 4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이후에는 단 한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도 발동하지 않다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2건의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1건, 1996년에 2건, 1999년에 1건으로 지금까지 총 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상위 10개 국가〉

(단위 : 건, 기간: '95년~'17.6월말)

Reporting Member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0.06.17	Total
India	0	0	1	5	3	2	0	2	1	1	0	0	0	1	10	1	1	1	3	7	2	1	0	42
Indonesia	0	0	0	0	0	0	0	0	0	1	1	1	0	2	0	7	4	7	0	3	1	0	0	27
Turkey	0	0	0	0	0	0	0	0	0	5	0	5	3	1	1	0	1	0	1	3	1	0	2	23
Chile	0	0	0	0	2	3	2	2	0	1	0	1	0	0	1	0	0	1	2	0	4	0	0	19
Jordan	0	0	0	0	0	1	0	8	0	0	1	1	1	2	0	1	0	1	0	1	0	1	0	18
Egypt	0	0	0	1	1	1	0	0	0	0	0	0	0	1	0	0	1	4	0	2	2	0	0	13
Ukraine	0	0	0	0	0	0	0	0	0	0	0	0	2	1	2	3	2	0	1	0	1	0	0	12
United States	1	2	1	1	2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2
Philippines	0	0	0	0	0	0	3	0	3	0	0	1	0	1	1	0	0	0	2	0	0	0	0	11
Czech Republic ¹	0	0	0	0	1	2	1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Ecuador	0	0	0	0	2	0	0	1	4	0	0	0	0	0	0	1	0	0	0	1	0	0	0	9
.....																								
Korea, Rep. of	1	2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Totals for 01/01/1995 - 30/06/2017	2	5	3	10	15	25	12	34	15	14	7	13	8	10	25	20	12	24	18	23	17	11	5	328

자료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

주 : 조사개시 순으로 발췌한 것으로 집계와는 맞지 않음

〈세이프가드 시행 상위 10개 국가〉

(단위 : 건, 기간: '95년~'17.6월말)

Reporting Member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India	0	0	4	1	1	0	2	0	0	1	0	0	0	3	0	1	2	0	4	0	2	0	21
Indonesia	0	0	0	0	0	0	0	0	0	0	1	0	0	2	0	7	1	1	2	3	0	0	17
Turkey	0	0	0	0	0	0	0	0	0	2	4	1	4	1	0	1	0	0	1	1	0	0	15
Chile	0	0	0	0	2	1	2	0	0	1	1	0	0	0	0	0	1	0	0	0	1	0	9
Jordan	0	0	0	0	0	1	1	2	0	1	0	1	0	0	1	0	0	1	0	0	0	1	9
Philippines	0	0	0	0	0	0	1	1	3	0	0	0	0	1	0	1	0	0	0	1	0	0	8
Egypt	0	0	0	1	1	1	0	0	0	0	0	0	1	0	0	0	1	0	0	1	0	0	6
United States	1	0	1	1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Czech Republic ¹	0	0	0	1	0	1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Ecuador	0	0	0	0	0	1	0	1	1	0	0	0	0	0	1	0	0	0	0	1	0	0	5
Morocco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1	0	1	0	1	5
.....																							
Korea, Rep. of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Totals for 01/01/1995 - 30/06/2017	1	3	5	5	7	9	14	15	6	6	7	5	6	10	4	11	6	8	11	11	5	9	164

자료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

주 : 시행건수 순으로 발췌한 것으로 집계와는 맞지 않음

- 조사 개시건 중에서 실제로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건을 보면, 인도가 21건으로 1위, 인도네시아가 17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총12건의

조사 개시건 중 실제로 시행한 건수는 6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총 4건의 조사 개시건 중 2건의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세이프가드 (Safeguard) 조치의 적용

-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산업피해를 막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량제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3년간의 수입량 수준이하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대 4년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심각한 산업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해당 산업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연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8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수입국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심각한 산업피해로 인한 조사의 개시 이유,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상황,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여부 및 연장에 관해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국은 세이프가드는 조치의 적용이나 연장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수출자에게 협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협의의 결과, 보상 형태, 양허의 정지 사항 등은 즉시 WTO 상품교역이사회에도 통보되어야 합니다.

□ 세이프가드 (Safeguard) 조치의 보상 및 보복

-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행위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해주거나 반대로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의 보복조치는 수입국에 제공했던 양허나 의무적용의 중지 등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협정을 위배하지 않고, 수입물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취해진 경우라면 세이프가드의 첫 3년간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www.wto.org / Agreement on Safeguards

